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1가합31040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씨엘

담당변호사 이유희, 조상준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손환필

**변론 종결**2021. 8. 13.

**판결 선고**2021. 9. 10.

주 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2019. 12. 14.경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0. 2. 14.경 체결된 25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2020. 3. 6.경 체결된 102,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2012. 2. 21.경 신용보증원금(보증금액) 24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4. 4. 18.경 신용보증원금 16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6. 3. 17.경 신용보증원금 152,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6. 3. 7.경 신용보증원금 4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6. 6. 22.경 신용보증원금 304,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며 소외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B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해가며 보증조건을 변경해 오던 중, 2020. 9. 18. 소외 회사의 휴폐업이라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해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2020. 11. 9. E 주식회사에게 합계 185,963,165원을, 2021. 3. 9.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491,798,599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B는 2019. 12. 11. B 소유의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를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로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9. 12. 14.경 70,000,000원을, 2020. 2. 14.경 250,000,000원을, 2020. 3. 6.경 102,000,000원을 각각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9. 12. 14.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와 같이 B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20. 3. 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증여 이후 B의 적극재산은 합계 1,506,348,000원 상당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B의 소극재산은 합계 6,038,310,341원 상당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은데, B는 이 사건 각 증여 무렵에도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    |                                         |             |
|----|-----------------------------------------|-------------|
| 1  | 경기 김포시 H 공장용지 1932㎡ 중 1/2지분             | 635,571,000 |
| 2  | 경기 김포시 H 지상 창고 중 1/2지분                  | -           |
| 3  | 충남 아산시 콘도 J호                            | 2,600,000   |
| 4  | 인천 중구 K 전 1275㎡                         | 661,725,000 |
| 5  | 인천 중구 L 전 48㎡                           | 24,912,000  |
| 6  | 경기 안양시 동안구 M 임야 26479㎡ 중 4413.5/26479지분 | 100,000,000 |
| 7  | 강원 강릉시 N 임야 31770㎡                      | 83,450,000  |
| 합계 | 1,506,348,000                           |             |

|    |               |               |
|----|---------------|---------------|
| 1  | 중소기업은행        | 2,207,750,000 |
| 2  | ○(주)          | 2,362,560,341 |
| 3  | P             | 250,000,000   |
| 4  | Q             | 300,000,000   |
| 5  | 원고            | 663,000,000   |
| 6  | 기술보증기금        | 255,000,000   |
| 합계 | 6,038,310,341 |               |

마. 또한, 소외 회사는 2018. 11. 30.경부터 거래처인 O에 대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11. 말경에는 그 채무가 2,362,560,341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2019. 11. 무렵부터는 직원에 대한 급여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2019. 7.분부터의 부가세 또한 체납하기 시작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보증사고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확인된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2,712,986,000원인 반면, 소외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합계 5,536,560,341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 27,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 전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보증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각 신용보증약정 및 그에 대한 B의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는 2018. 11.경부터 이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각 증여 무렵에는 임금 및 세금까지 체불 또는 체납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 또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위와 같은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실제로 소외 회사에 대한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B에 대한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각 증여 무렵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운영하던 소외 회사의 경영 악화로 부부관계 또한 급격히 악화되어 B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위 각 돈은 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B나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와 피고는 여전히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

각 돈을 이용하여 매수한 아파트에 함께 전입신고를 한 이래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병삼**

**판사김병휘**

**판사조현우**

**별지**